

宇宙物體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研究

The Study on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Space Objects

朴憲穆*

■ 목차 ■

1. 서 론
2. 손해배상책임조약
3. 손해배상절차
4. 결 론

1. 序 說

인간의 끊임없는 宇宙에 대한 연구는 달 着陸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太陽系에 대한 탐구와 宇宙探査船의 발사를 통하여 인류의 우주에 대한 신비와 地球生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宇宙運搬體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施行錯誤를 낳았고 이를 시정하여 더 나은 宇宙船을 만들어 우주에 대한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宇宙破片이 지구에 월새없이 낙하하고 있다.)¹⁾

* 慶星大學校 法學科 教授, 法學博士, 本學會 상임이사

1) 1960년 11월 지구로 귀환한 미국위성에서 나온 우주파편(debris)이 쿠바의 홀진마을 부근에 떨어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소를 죽인 사건, 1962년 2월 미국 우주비행사 존·글렌이 착륙할 때 사용한 아틀라스 109 위성보조 추진장치가 남아연방 알리반 노사부근에서 발견이 되고 있으며, 1968년 가을에 캐나다 북 사스카체완에서 미국위성착륙차량의 커다란

宇宙活動에 있어서 國際責任은 宇宙條約에 규정된 一般原則과 1972년 9월 체결된 宇宙損害賠償條約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國際責任과 國際法主體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립된 法律違反에 대한 법률효과의 하나이고 이를 조건으로 한다.²⁾

宇宙發射物體 및 그 구성부분에 따른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은 宇宙條約 제7조가 정하고 있다. 제7조를 해석하면 「條約의 當事國은 달과 다른 天體를 포함하는 宇宙空間에 물체를 발사한 경우, 또는 그 領域이나 施設에서 물체가 발사된 경우에는 그 물체 또는 그 구성 부분이 地球上 大氣空間 또는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어서 條約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自然人 혹은 法人에 끼친 손해에 관하여 국제적인 책임을 진다.」³⁾

제7조는 제네바 條約案 L.2와 같이 조약성문으로서 채택된 것이다. 이 안은 蘇聯草案 제7조에 약간의 변경을 가하고 法原則宣言 제8항과 약간의 자구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美國案은 蘇聯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蘇聯草案 제7조에 대하여 찬성하는 태도였다. 이를 위한 全體會議에서 WP.No.16을 제안하여 蘇聯案을 수락하였다.⁴⁾

이 論文은 宇宙에 발사되는 物體가 落下함으로써 발생하는 損害에 관하여 賠償責任條約을 살펴보고 그 賠償責任節次을 검토하기로 한다.

파편이 발견되었다(N. M. Matte, Aerospace Law, The Carswell Limited, Canada, 1969, p.339).

1962. 9. 스포트니크 4호의 철편의 낙하, 1978. 1. 코스모스 945호 및 1402호의 낙하로 인한 방사능물질의 산개, 스카이랩의 낙하 등 많은 우주선의 추락에 따른 피해국의 가해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문제가 생성되고 있다.

2) S. Bestide, Cours du droit international public, Polycopie, 1974~1975, pp.445~450. 再引用(龍澤邦彥, 宇宙法 시스템 -宇宙開のための法制度-, 興仁舎, 1985, 226~227面).

3) 제7조 원문은 아래와 같다.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that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n object into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nd each State Party from whose territory or facility an object is launched, is internationally liable for damage to another State Party to the Treaty or to its national or juridical persons by such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on the earth, in air space or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5) Doc, A/AC. 105/C. 2/PR, 67. p.52.

2. 損害賠償責任條約

1. 責任의 發生

條約 제7조는 發射物體에 따른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원칙규정으로 책임 규정의 특칙이다. 발사물체에 따른 손해에 관한 책임은 不法行爲責任이고 이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을 정하는 것과 共同宇宙活動에 있어서 共同行爲를 부담해야 할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賠償責任規定에 따라 責任의 發生條件, 免責事由, 責任範圍 등 세부에 관하여 정한다. 責任負擔主體는 제7조에 따라서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宇宙空間에 물체를 발사하고,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관 등이 물체의 발사를 하는 條約當事國이다. 그리고 조약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시설 기타 국가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물체를 발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국가에 따라 不法行爲別로 국가의 特權免除을 주장할 수 없다.⁵⁾ 발사물체 또는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손해를 부여한 경우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지며, 손해의 발생장소는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宇宙空間만이 아니라 大氣空間 및 地球를 포함한다.

조약 제7조는 條約當事者의 책임이 발생하는 장소로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하는 宇宙空間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된 경우 또는 그 領域 및 施設에서 물체가 발사된 경우」로 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① 自國政府가 宇宙空間에 물체를 발사하는 경우이다. 우주물체가 타국에서 제조되어 자국만이 자기의 책임으로 발사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宇宙物體를 발사한 경우이다. 자국정부가 우주물체의 發射經費를 부담하고 혹은 우주물체를 제공하는 등 자국의 서명 또는 타국정부의 서명에 의하여 우주물체의 발사를 하는 것이다.

③ 他國政府가 자국의 영역 또는 자국의 시설에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발사하는 타국과 동시에 자국이 책임을 진다. 즉 자국은 우주물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지는 것으로 조약 제7조의 특색으로 지적된다.⁶⁾

5) 池田文雄, 宇宙法論, 成文堂, 1971, 221面.

6) 池田文雄, 前掲書, 223面.

조약 제7조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는 우주공간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構成部分에 따라 損害가 特定되고 있다. 이 손해는 發射物體 또는 그 구성부분에 따른 物理的 損害를 의미한다. 따라서 宇宙空間에 있어서 타 당사국의 人工衛星, 宇宙船 등 宇宙飛行體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損害發生과 加害行爲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필요하며, 그 기준은 각국의 법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責任規定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航空機에 있어서 新로마條約 즉 「外國航空機에 따른 地上 제3자의 損害에 관한條約」(1952)에서는 사고의 직접결과인 손해만이 한정되고 있다.⁷⁾

損害는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국민인 自然人 또는法人에 있어서 生命의 喪失, 身體障礙, 財產上 損害를 들 수 있다. 손해의 피해자는 조약당사국인 외국 또는 그 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서 사법적 절차나 국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손해의 발생장소는 지구상, 大氣空間 또는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하는 宇宙空間이다.⁸⁾ 이러한 장소에서 宇宙物體의 上昇, 飛行落下, 着陸의 과정에서 야기된 損害가 제7조의 대상이 된다. 즉 우주공간의 달과 다른 천체상에 착륙한 물체에 따라 천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본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발생장소는 지구상의 대기공간에 있어서 손해가 사람 및 재산에 대한 손해인지 地上 제3자에 대한 손해이다. 대기공간에 있어서의 손해는 통상 항공기에 대한 손해이며,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손해는 타조약 당사국의 宇宙飛行物體와의 충돌에 대한 손해이다.

2. 責任原則

損害賠償에 있어서 民事法의 原則을 실제로 우주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외국의 영역, 재산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賠償責任原則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각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른 민사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하여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⁹⁾

7) 池田文雄, 國際航空法概論, 1956, 175面.

8) 우주물체 낙하사례 : 1963년 9월 미국 위스콘신주, 1978년 캐나다의 소련 코스모스 954 등의 낙하 등을 들 수 있다.

責任條約은 賠償責任의 종류를 구별하고 있다. 조약은 외국국가, 외국인 또는 외국재산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대상으로 하고, 배상책임의 기초를 두고 다른 원칙을 거론하고 있다.¹⁰⁾

“國際法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국가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¹¹⁾ 미국은 국제법에 기초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소련은 책임 범위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하여 印度가 주장한 것을 반대하였다. 제7조에 있어서 부담된 책임이 過失責任인가 無過失責任인가에 대하여 각자의 加害의 성질에 따라야 한다. 발사물체에 따라 지상제3자의 손해의 경우에는 無過失責任을 타당한 것으로 하고 타국의 宇宙物体와의 충돌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¹²⁾

3. 責任主體

(1) 國 家

宇宙損害賠償條約 제2조와 3조에 의하면,¹³⁾ 發射國이 宇宙物體에 따라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條約 제1조(c)에 의하면, 우주물체를 발사 또는 발사한 나라, 우주물체가 그 영역 또는 시설에서 발사하게 된 나라를 發射國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宇宙條約 제7조에 따른다. 우주물체의 발사는 수개국이 행하며 발사국이 복수인 경우이다. 우주조약 제5조이하에는 2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한 때에는 발사에서 생긴 모든 손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損害賠償發射國은 共同發射參加國에 대하여

9) E.R.C.Bogert(栗林忠男譯).. 國際宇宙法論, 信山社, 1993, 191面.

10) 前掲書, 193面.

11) Staff report, p.29. “The States accepts responsibility to make restitution to …” .

12) 池田文雄, 前掲書, 222面.

13) Article II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

Article III

In the event of damage being caused elsewhere than on the surface of the earth to a space object of one launching State or to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such a space object by a space object of another launching State, the latter shall be liable only if the damage is due to its fault or the fault of persons for whom it is responsible.

求償權을 가진다. 공동발사참가국은 연대하여 책임지는 금전상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간의 분담에 관하여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물체가 그 영역 또는 시설에서 발사되는 국가를 共同發射國으로 본다.¹⁴⁾

(2) 國際機關

宇宙損害賠償條約 제22조1항¹⁵⁾은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 條約의 調印, 批准, 改正 기타 節次規定을 두고 있는데, 이를 제하고 국가에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우주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관에 적용한다. 즉 기관의 加盟國의 과반수가 이 조약 및 우주조약의 締約國인 것, 기관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수락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동조 제2항¹⁶⁾에 의하면, 機關의 加盟國에서 이 조약의 締約國은 기관이 전항에 따라 선언하기 때문에 전적인 조치를 취한다. 동조 제3항¹⁷⁾은 정부간 국제기관이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當該機關 및 그 加盟國에서 이 조약의 체약국은 다음 조건에서 連帶責任을 진다. ① 손해에 관하여 賠償請求가 우선 당해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② 당해기관이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으로서

14) 龍澤邦彥, 前揭書, 230~231面.

15) Article XXII

- In this Convention, with the exception of articles XXIV to XXVII, references to States shall be deemed to apply to an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conducts space activities if the organization declares its acceptance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nd if a majority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r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nd to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16) States members of any such organization which ar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the organization makes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 17) If an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s liable for damage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at organization and those of its members which ar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provided, however, that:
- (a) Any claim for compensation in respect of such damage shall be first presented to the organization;
 - (b) Only where the organization has not paid,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any sum agreed or determined to be due as compensation for such damage, may the claimant State invoke the liability of the members which ar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for the payment of that sum.

합의된 또는 결정된 金錢을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만 請求國이 그 기관의 가맹국에서 조약의 체약국인 국가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동조 제4항¹⁸⁾에 의하면 전기 제1항에 따라 선언한 기관에 관하여 야기된 손해에 있어서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배상청구를 당해기관의 가맹국에서 이 조약의 체약국인 국가에 따라서 제출되어야 한다.

4. 責任의 要素

(1) 損害

손해라 함은 人命의 損失, 身體의 傷害, 健康의 傷害 또는 國家, 自然人, 法人 또는 정부간 國際機關의 재산의 손실 또는 그들의 재산의 손해를 말한다(우주손해배상조약 제1조).

이 규정은 물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의 의미는 「완전한 肉體的, 精神的, 社會的 安寧의 상태」를 WHO憲章의 前文에 명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외의 상태 즉 精神的 쇼크, 原子力 傷害 등의 손해가 포함된다 이 내용은 1965년 형가리案 제1조에 따라 채택되었다.¹⁹⁾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가리가 「일반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가지는 국가의 법률이 그와 같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손해의 이유에서 배상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²⁰⁾ 조약 중의 손해의 정의는 건강의 상해를 포함하며, 서명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진실하며 감정적으로 애매한 것이 아닌 때에 金錢賠償으로 인정된다.²¹⁾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장애 기타 건강의 장해」는 육체적 장해만은 아니고 사회적 안녕을 무너뜨리는 장해와 같으며, 정신적 장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해석을 보충하는 것으로 건강은 「완전한 육체적,

18) Any claim,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for compensation in respect of damage caused to an organization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presented by a State member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19) 龍澤邦彥, 前掲書, 236面, 형가리案으로서는 A/AC. 105/C. 2/L. 1Rev.1이 있다.: 栗林忠男, 前掲書, 201面.

20) A/AC. 105/C. 2/L. Rev.1, art. II.

21) 龍澤邦彥, 前掲書, 237~238面.

정신적 및 사회적 복지상태』로 설명하고 있는 世界保健機構憲章을 인용한 것이다.²²⁾ 신체의 장해는 광의이고, WHO의 정의나 精神障害에 미친다. 그러나 사고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 예컨대 사생활의 침해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문제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사고와 이러한 종류의 실제손해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다는 것이 立証된다면, 賠償責任의 原則이 적용되어야 한다.²³⁾ 責任條約 가운데 원자력 손해에 대하여 규정을 하여야 하느냐 여부에 있어서 法律小委員會에서 논쟁이 생겼다. 西方諸國은 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국제조약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지만, 소련 및 동구대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개의 조약을 두든가, 1963년 原條約의 수정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法律小委員會의 다른 대표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전원이 일치하여 원자력 손해를 責任條約의 규정 외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1963년 원조약의 수정도 적절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1969년 소련대표는 原子力損害를 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²⁴⁾ 間接的 損害는 1968년 COPUOS의 法律下部委員會에 있어서 우주물체발사와 야기된 손해간에 적절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그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가 사고후에 생기고 조약에 의해 카버된다고 주장하였다.²⁵⁾

(2) 危險 및 過失

1) 危險責任

宇宙損害賠償條約에 의하면 “發射國은 자국의 宇宙物體가 地表에 있어서 야기된 손해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입은 損害에 관한 無條件 賠償을 행할 책임을 가진다(제2조).²⁶⁾ 지상제3자에 대하여 야기된 손해에 관하여 危險責任主義은 로마조약(1952)과 국내법에서 속용되고 우주물체에 따라 손해에 類

22) S.Gorove, Studies in Space Law : its Chauenges and Prospects, 1977, p.125.

23) 사생활의 침해에 관하여, S.Gorove, op.cit., p.127.

24) M.G.Marcoff,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space, 1973, p.550. B. Cheng,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in Nanual on Space Law, ed. 1979. 1., p.119.

25) A/AC. 105/C. 2/SR. 103, p.21.

26) 각주 13 참조.

推適用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다.²⁷⁾

위의 제2조는 위험책임주의에 기하고 있다. 위험책임은 嚴格責任의 일종으로 國內法에서 발달하고 적용되어야 할 이론이다. 英美法系의 학자의 주장이 기초로 되는 것으로는 ultra hazardous activities의 原則이다.

2) 不可抗力(自然災害)

法律下部委員會에서 몇몇 대표에 의하여 免責事由라고 하고 있었다. 1964년 헝가리草案 제4조는 “손해가 지상 또는 대기권에서 일어난 경우에 책임의 면제는 책임을 가진 국가가 손해가 自然損害 혹은 손해를 입하고 있는 국가의 故意行爲 또는 중대한 부주의에서 생긴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하였다.²⁸⁾ 소련대표는 위의 自然災害에 관한 헝가리의 免責案은 危險責任의 原則과 같이 수용하고, 多數國家 및 國제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²⁹⁾

3) 過失責任

宇宙損害賠償條約 제3조에 의하면, “손해가 하나의 発射국의 宇宙物体 또는 그 우주물체 내의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따라 지표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야기된 경우에는 당해 다른 발사국은 그 손해가 자국의 과실 또는 자국이 책임을 져야 할 자의 과실에 따르는 한에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過失責任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다.

4) 波及損害

宇宙損害賠償條約 제4조 1항에 의하면, 「손해가 하나의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그 우주물체 내의 사람 혹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따라 지표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야기되어 그 결과 손해가 제3국, 그 自然人 또는 法人에 대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그들 두 발사국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27) Seara Vásquez, Cosmic International Law, p.123 ; Charles Chaumon, le droit de l'espace.

28) A/AC. 105/C. 2/L. 10.

29) A/AC. 105/C. 2/SR. 50. 기타 불가리아 및 폴란드대표가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A/AC. 105/L. 2/SR. 78) : 龍澤邦彥, 前揭書, 242面.

이하의 정하는 조건에 따라 連帶責任을 진다. (1) 손해가 제3국에 대하여 지표 또는 비행중의 航空機에 관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당해 제3국에 대하여 당해 2발사국의 책임은 無條件이다. (2) 손해가 제3국의 우주물체 또는 이 물체내의 사람 혹은 재산에 대해 地表 이외의 장소에서 야기된 경우에는 當該 두 發射國의 제3국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一方 發射國의 過失 또는 발사국의 각각이 책임을 져야 할 자의 과실에 기한다. 동조 제2항은 「損害賠償의 責任은 당해 두 발사국이 각자의 과실의 정도에 응하여 분담한다. 당해 두 발사국 각각의 과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은 그들간에 평등한 방식에서 분담된다. 그 분담은 제3국이 連帶責任을 지는 어느 것이든一方 發射國 또는 각각의 발사국에 대해서 및 조건에 기하여 지불되어야 할 배상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4조는 기능적 연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³⁰⁾ 예를 들면 A국의 宇宙物體가 B국의 宇宙物體, 그 乘務員 및 재산에 야기된 손해가 地表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제2의 손해를 야기할 경우 및 지표 이외의 大氣圈, 달 및 다른 천체를 포함하는 宇宙空間에서 C국의 宇宙物體, 그 乘務員 및 財產에 대하여 제2의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前者は 危險責任, 後者は 過失責任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실의 정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의 賠償責任은 均等分配된다. 宇宙損害賠償條約의 적용에 있어서 軍事用宇宙物體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제4조 1항은 킬러衛星에 따라 손해가 제3국에 대하여 야기된 손해에도 적용된다.³¹⁾

3. 損害賠償節次

배상에 관하여는 宇宙損害賠償條約에서 當事國間에 外交交涉을 하거나 請求委員會에 따라 해결한다.

30) P.N.Dupuy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P.N.Dupuy, La responsabilité internationale des Etats pour Les dommages d'origine technologique et industrielle, p.64.

31) M.D.Folkosch, Outer Space and Legal Responsibility, Nijhoff, 1982, p.83.

1. 外交交涉에 따른 解決方法

(1) 外交交涉의 主體

損害賠償請求는 손해를 입은 國家, 自然人 또는 法人이 損害를 입은 국가에 제출한다(동 조약 8조 1항).³²⁾ 손해를 입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 國籍을 가지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국가는 자국의 영토상 입은 손해에 관하여 發射國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는다(동조약 8조 2 항).³³⁾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국적을 가지는 나라도 자국의 영역상에서 당해 손해가 생긴 국가도 손해배상을 제출하지 않고 또 당해 청구를 하는 의지를 통고한 경우에 「다른국가는 자구에 영주하는 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發射國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동조 3항).³⁴⁾

그리고 請求는 外交経路를 따라 發射國에 대하여 한다(동조약 9조).³⁵⁾ 發射국과 外交關係를 가지지 않는 국가는 제3국의 발사국에 대한 청구의 제출 및 기타 방법에 따라 宇宙損害賠償條約에 기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는 양국과 國際加盟國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유엔事務總長을 통하여 한다.

-
- 32) A State which suffers damage, or whose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suffer damage, may present to a launching State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such damage.
 - 33) If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not presented a claim, another State may, in respect of damage sustained in its territory by any natural or juridical person, present a claim to a launching State.
 - 34) If neither the State of nationality nor the State in whose territory the damage was sustained has presented a claim or notified its intention of presenting a claim, another State may, in respect of damage sustained by its permanent residents, present a claim to a launching State.
 - 35)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 shall be presented to a launch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f a State does not maintain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launching State concerned, it may request another State to present its claim to that launching State or otherwise represent its interests under this Convention. It may also present its claim throug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provided the claimant State and the launching State are both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2) 請求提出期間

賠償請求는 손해발생일 또는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는 발사국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發射國에 대하여 할 수 있다(동조약 10조 1항).³⁶⁾ 만약 어떤 국가가 損害發生을 몰랐거나,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는 국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청구는 해당 국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수리된다(10조 2항).³⁷⁾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기한이 손해의 범위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것도 적용되며, 請求國은 규정된 기한후에 손해의 범위가 정확히 판명된 때부터 일년기간의 종료까지 그 청구를 수정하고 補充書類를 제출하는 권리가 있다(10조 3항).³⁸⁾

(3) 責任免責

宇宙損害賠償條約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또는 국가가 대표하는 自然人 또는 法人이 發射國의 法院 또는 行政機關에 있어서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는 청구가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있어서 혹은 關係當事國이 구속된 다른 國際契約의 적용에 따라서 이미 제출되고 있는 손해에 관하여 이 조약에 기한 청구를 제출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11조2항).³⁹⁾

-
- 36)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 may be presented to a launching State not later than one year following the date of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or the identification of the launching State which is liable.
 - 37) If, however, a State does not know of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or has not been able to identify the launching State which is liable, it may present a claim within one year following the date on which it learned of the aforementioned facts; however, this period shall in no event exceed one year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State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learned of the facts through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 38) The time-limits specifi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apply even if the full extent of the damage may not be known. In this event, however, the claimant State shall be entitled to revise the claim and submit additional documentation after the expiration of such time-limits until one year after the full extent of the damage is known.
 - 39)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State, or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it might represent, from pursuing a claim in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a launching State. A State shall not, however, be entitled to present a claim under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ame damage for which a claim is being pursued in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a launching State or under an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is binding on the States

無過失責任에 관하여 발사국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請求國 또는 청구국에 따라 대표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의도한 作爲 혹은 不作爲가 아닌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⁴⁰⁾ 제6조⁴¹⁾에 의하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국의 중대한 過失 또는 作爲 혹은 不作爲에 따라 야기된 것을 발사국이 증명할 경우에는 그 한도에 있어서 無過失責任이 면제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발사국은 손해가 청구국의 중대한 과실,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한 작위나 부작위에 따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發射國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 當事國에 과실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발사국이 부분적인 책임의 면제를 원용하는 것 뿐이다. 청구국이 중과실 또는 의도적 작위, 부작위에 따라 손해의 경감을 이룬 발사국이 입증된 경우에도 부분적인 책임은 면제된다.⁴²⁾

免責은 특히 自然災害에 관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대표의 다수가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擴大解釋의 가능성성이 있으며 無過失責任의 원칙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⁴³⁾ 이 점에 관하여 책임조약은 형평의 결과를 고려해야 할 賠償責任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에서 벗어나고 있다.

제5조는 「분담에 관하여 그 취급은 연대하여 부담을 주는 이러한 하나의 발사국 또는 모든 발사국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국가가 이 조약에 기하여 지불되어야 할 賠償條約을 청구하는 권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concerned.

40) 栗林忠男, 前掲書, 198面.

41) Article VI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exoneration from absolute liability shall be granted to the extent that a launching State establishes that the damage has resulted either wholly or partially from gross negligence or from an act or omission 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n the part of a claimant State or of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it represents.
 2. No exoneration whatever shall be granted in cases where the damage has resulted from activities conducted by a launching State which are not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 particula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42) W.F.Fost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 C.Y.I.L, 1972, p.161. 여기서 보상분배에 관하여, M.G.Marcoff, *Traité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de l'espace*, 1973, p.549.
- 43) W.F.Foster, op.cit., pp.162~163.

있다. 그리고 제5조 2항⁴⁴⁾은 배상의 支拂分擔에 관하여 連帶責任을 지는 국가간에서 자유로이 취급하는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責任條約은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불이익으로 되지 않는 한 의무를 수락하는 국가의 합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4) 賠償額의 決定

「發射國이 손해에 관하여 이 조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賠償額은 청구에 관계한 自然人, 法人, 國家 또는 國際機關에 관한 손해가 생겼다면 존재한 상태에서 회복되어 損害賠償이 이루어지는 바와같이 國際法에 병행하여 正義 및 衡平의 原則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조약 제12조).⁴⁵⁾

제12조는 一般國際法의 原狀回復의 原則(restitutio in integrum)을 賠償額의 決定指針으로 하고 있다.⁴⁶⁾ 損害賠償額의 限度에 대하여 1967년 헝가리案은 당초의 責任限度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삭제되고, 1968년 미국이 限度額을 5억달러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⁷⁾ 몇몇국가는 실제적인 양도로서 限度額이 충분히 높은 것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고자 하였다. 즉 프랑스대표는 한도액이 5억달러 이하는 아니고, 國際法 특히 宇宙條約 및 그 이해 규칙에 위반한 加盟國에 적용되지 않는 責任限度額을 수용하는 조건을 두고 있었다.⁴⁸⁾ 아랍聯盟代表는 宇宙事故의 賠償限度額은 발생할 손해를 덮을 수

44) A launching State which has paid compensation for damage shall have the right to present a claim for indemnification to other participants in the joint launching. The participants in a joint launching may conclude agreements regarding the apportioning among themselves of the financial obligation in respect of which they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Such agre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State sustaining damage to seek the entire compensation due under this Convention from any or all of the launching States which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45) The compensation which the launching State shall be liable to pay for damage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ity, in order to provide such reparation in respect of the damage as will restore the person, natural or juridical,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whose behalf the claim is presented to the condition which would have existed if the damage had not occurred.

46) 龍澤邦彥, 前掲書, 248面.

47) A/AC. 105/C. 2/SR. 106, p.52; A/AC. 105/SR. 123et 152; 미국은 한도액을 둘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48) A/AC. 105/C. 2/SR. 123 p.125. 그외 오스트레일리아 및 이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SR.116, SS.126).

있기에 충분하다면 유용하다고 하였다.⁴⁹⁾ 결국 한도액 설정에 관한 제안은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5) 特別援助

「宇宙物體에 따라 야기된 손해가 생명에 대하여 대규모적인 위험을 가진 것 또는 주변의 생활조건 혹은 中樞部의 기능을 현저하게 막는 경우에 손해를 입은 국가의 요청에는 締約國 특히 發射國은 손해를 입은 국가에 대하여 적절히 신속한 원조를 부여하는 것의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물론 이 條文의 규정은 이 協約에 기하여 체약국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제21조).⁵⁰⁾

이 규정은 1971년 모로코의 提案으로 채택되었다.⁵¹⁾ 모로코 대표는 宇宙損害賠償條約이 광범위하게 중대한 것으로 被害者에 대하여 그 상태에 있기 전에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 특히 한정된 자원을 갖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 생긴 상태의 경우에 当事國間의 원조에 관하여 적절한 계약을 확립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⁵²⁾ 그러한 경우에 보상은 부적절하고 다른 國際協力形態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請求委員會에 의한 解決

(1) 構 成

請求國이 청구에 관한 證據書類를 송부한 것을 발사국이 송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賠償請求가 제9조에 따라서 외교교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關係當事國은 일방의 요청에 따라 請求委員會를 구성한다(제14조).⁵³⁾

49) A/AC. 105/C. 2/SR. 123.

50) If the damage caused by a space object presents a large-scale danger to human life or seriously interferes with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opulation or the functioning of vital centres, the States Parties, and in particular the launching State, sha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rendering appropriate and rapid assistance to the State which has suffered the damage, when it so requests. However,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States Parties under this Convention.

51) PUOS/C. 2/WG(X)/L. 4/Rev.1.

52) A/AC. 105/C. 2/SR. 152~169, p.57.

請求委員會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인은 청구에 따라 1인은 發射國에 의해서 임명된다. 議長으로 이루어지는 제3의 위원은 쌍방의 當事者에 따라 선정된다. 당사국은 청구위원회의 설치요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위원을 임명한다(제15조 1항).⁵⁴⁾ 그리고 委員會의 설치요청의 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의장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 어느 당사국도 유엔사무총장에 이미 2개월이내에 의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5조 2항).⁵⁵⁾ 請求委員會의 구성은 둘 이상의 청구국 또는 발사국이 이 위원회의 절차에 참가하는 이유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절차에 참가하는 청구국은 하나의 청구국이 아닌 경우와 같은 방법과 조건에서 1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둘 이상의 발사국이 그와 같은 절차의 당사국인 경우도 그들은 같은 1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청구국 또는 발사국이 규정된 기간내에 위원의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의장이 단독으로 委員會를 구성한다(제17조).⁵⁶⁾

-
- 53) If no settlement of a claim is arrived at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as provided for in article IX,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claimant State notifies the launching State that it has submitted the documentation of its claim, the parties concerned shall establish a Claims Commission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 54) The Claims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one appointed by the claimant State, one appointed by the launching State and the third member, the Chairman, to be chosen by the both parties jointly. Each party shall make its appointment within two months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 55) If no agreement is reached on the choice of the Chairman within four months of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either party ma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appoint the Chairman within a further period of two months.
 - 56) No increase in the membership of the Claims Commission shall take place by reason of two or more claimant States or launching States being joined in any one proceeding before the Commission. The claimant States so joined shall collectively appoint one member of the Commission in the same manner and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s would be the case for a single claimant State. When two or more launching States are so joined, they shall collectively appoint one member of the Commission in the same way. If the claimant States or the launching States do not make the appoint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the Chairman shall constitute a single-member Commission.

(2) 權 限

청구위원회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고 규정되고 있다(19조 1항).⁵⁷⁾ 위원회는 자기의 절차를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6조 3항).⁵⁸⁾ 委員會는 회합의 개최장소와 병행하여 다른 전부의 사무적인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다(18조).⁵⁹⁾ 위원회가 1인의 위원에서 구성된 경우에 내린決定 및裁決의 경우를 제하고 위원회의 모든 결정 및 재결은 過半數에 따라裁決한다(16조 5항).⁶⁰⁾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것과 동시에拘束力を 가지며, 합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결정 또는 재결에 관한 이유를 서술한다(19조 2항).⁶¹⁾ 위원회는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늦어도 1년이내에 결정 또는 재결한다. 만약 이 위원회가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한하지 않는다(19조 3항).⁶²⁾ 위원회가 별단의 결정을 하지않는 한 청구위원회에 관한 비용도 當事國間에서 균등하게 분담된다(제20조).⁶³⁾ 청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이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가 草案을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불가리아, 헝가리, 소비에트의 共同提案은 紛爭當事國이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론이 최종적으로 당사국을 구속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의 공동제안은 분쟁당사국의 결정시 위원회의 결론이 최종적으로 當事國을 구속하도록 하는 것이었다.⁶⁴⁾

57) The Claims Commission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

58) The Commission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

59) The Claims Commission shall decide the merits of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yable, if any.

60) Except in the case of decisions and awards by a single-member Commission, all decisions and awards of the Commission shall be by majority vote.

61)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otherwise the Commission shall render a final and recommendatory awards, which the parties shall consider in good faith. The Commission shall state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or award.

62) The Commission shall give its decision or award as promptly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ts establishment, unless an extension of this period is found necessary by the Commission.

63) The expenses in regard to the Claims Commission shall be borne equally by the parties,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ssion.

64) 미국(A/AC. 105/C. 2/L. 19 et L.58, art.10), 벨기에(A/AC. 105/C. 2/L. 7/Rev.3,

그후 미국과 소련간의 請求委員會의 결정에 관한 法的 性質에 있어서 합의가 성립되고 인도안을 고려할 벨기에, 브뤼셀 및 헝가리의 共同提案이 妥協案으로 제출되고 이 妥協案에 따라 現行規定이 성립된 것이다.⁶⁵⁾

4. 結 語

宇宙損害賠償條約에 따라 責任의 發生, 責任原則, 責任主體, 責任要素에 맞추어 검토하고 賠償節次에 의하여 검토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주를 향한 인간의 집념이 우주공간에 많은 人工衛星과 기타 飛行物體가 부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宇宙破片으로 남아 그 중 상당한 부분이 지구로 낙하하거나 낙하할 우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발사국을 상대로 損害賠償問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손해배상조약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國際條約으로 지적된다. 즉 宇宙活動에 있어서 國際責任은 우주조약에 규정된 一般原則과 宇宙損害賠償條約(1972)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책임과 국제법주체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립된 法律違反에 대한 法律超過의 하나이며 이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日本航空宇宙法學會 小委員會에서 나온 最終報告書에 따르면 지름10cm이상의 우주파편이 5000km내의 궤도에 약 7000여개가 있으며, 宇宙空間에서 宇宙破片間의 충돌확률이 2005년에는 1987년에 비하여 3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NASA는 우주파편이 高度 800~1000km의 地球周邊空間에 20,000~70,000개가 있다고 공표하고 있다.⁶⁶⁾

이상과 같은 被害問題를 고려하여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損害問題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art.4), 이탈리아(A/AC. 105/C. 2/L. 10/Rev.1, art.10), 헝가리(A/AC. 105/C. 2/L. 10/Rev.1, art.11)의 각 초안 참조. 그리고 A/AC. 105/C. 2/L.76.

65) 龍澤邦彥, 前掲書, 255~256面.

66) 金斗煥, 宇宙破片에 起因되는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研究, 航空宇宙法學會誌 제7호, 1995, 211面.